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

□ 지급대상

-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**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**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
-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 일수가 1/2일 이상인 경우

□ 지급제외

○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〈취업〉

-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(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인수·합병·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)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- 대기기간(실업 신고일부터 7일)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/2일 미만인 경우

〈자영업〉

○ 재취업(자영업) 준비활동 계획서를 신고하고,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경우

□ 지급기준

○ 지급액: 구직급여일액 × 잔여 급여일수의 1/2

□ 제출서류

- 취업자
 -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1부
 - 현재 사업장 재직증명서 1부
 - 자영업자
 - 사업자등록증 1부
 -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☞ 서류 접수방법: 직접 방문(대리인 접수 가능), 우편, 팩스 〈처리기한: 14일(공휴일 제외)〉

전화: 055-730-1912

팩스: 0508-8230-0492